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주요 내용 및 성과

조현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배경

국토교통부는 1999년부터 「건축법」 제78조에 따라 건축민원 처리실태, 위반 건축물 정비 등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사업의 사업기간·사업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걸림돌로 작용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지자체 지침과 불합리한 조례 등 숨은 건축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아울러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민원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기존 해석 답습 또는 회피성 민원 처리로 만족도는 저하되는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시행된다.

그런 가운데 2014년 11월 최초로 시행한 제도(건축협정제, 건축민원위원회 등)에 대한 지자체 준비사항 점검 등을 통해 법령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여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시행하였다.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와 차별화

기존 민원만족도 제고 위주의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민원만족도의 배점을 대폭 축소(90% → 30%)하고 지자체가 행정편의적으로 운영하는 ‘임의규제 정비 노력도’를 중점에 두고,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창의적 건축행정 추가 등 점검항목을 다양화하였고, 건축민원 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포상을 확대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3~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항목 주요 내용

구분	2013년도	2014년도
점검 내용	적극적 민원처리(60%) (민원발생을 및 민원감축률 등)	임의규제 정비 노력도(50%) (규제 발굴 및 폐지율 등)
	민원만족도 제고 노력(30%) (민원만족률, 처리기간 준수율 등)	적극적 민원처리(30%) (민원발생을 및 민원감축률 등)
	우수사례 언론보도 실적 등 (10%)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20%) (건축협정제, 민원위원회 준비 등)
인센 티브	6개 (기관 3, 건축유공자 3)	20개 (기관 3, 건축유공자 17)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계획

2014년 6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내실 있게 운영 하기 위해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계획에 대해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벌여 점검계획 을 보완하여 최종 확정하였다.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4개 항목에 대 해 총 110점 만점을 기준으로 17개 시·개도를 대상 으로 지표에 따라 상대·절대 평가를 실시하였고, 평 가항목과 세부 평가지표는 아래와 같다. 정성평가 항 목인 적극 민원처리 노력은 시·도 간의 형평성을 감 안하여 17개 시·도 평균 허가(신고)처리건을 기준으 로 허가(신고)건이 평균 이상(이하)에 해당하는 기관 은 보정점수를 반영하였다. 보정은 평균을 기준으로 20% 비율로 증감 때마다 배점의 ±3%를 가감(최대 ±15%)하였다.

2014년 건축행정건실화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100)	비고
임의 규제정비 노력도(40점)	규제(임의지침, 불합리한 조례) 정비율 1) 자체 발굴·개선율(개선건/발굴건×100) * 임의지침에 한정(11월 현장점검 시까지 실적)	40 15	· 상(15), 중(10), 하(5)
	2) 규제 폐지율(폐지건수/발굴건수×100) * 국토부 조사 내용 기준	25	· 상(25), 중(17), 하(10)
적극 민원처리 노력도(20점)	민원발생 및 감축률(인·허가 처리 대비)	20	· 비율 낮은 시·도를 기준으로
	3) 일반민원 처리건/인·허가 처리건×100	5	-0.2(지표4는 0.4)점씩 감점
	4) 국토부 민원 중 지자체별 민원건/지자체 인·허가 처리건×100	10	
	5) 2014년 민원건/2013년 민원건×100	5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40점)	창의적 건축행정 준비도	40	· 상(15), 중(10), 하(5)
	6) 건축협정제 준비(시범사업참여도, 제도 홍보 등)	15	
	7) 건축민원위원회 준비사항(조례개정 및 사무국 구성 준비 등)	15	· 상(10), 중(7), 하(3)
	8) 주택 유지·관리 지원(센터설립 준비 및 조례 개정 등)	10	* 평가항목(8, 9)은 선택하여
	9) 지자체 자체 창의적 건축행정 우수사례	10	해당 항목만 제출
기타 (±10점)	가·감점 등 정성평가 10) 가점 : 점검자료 충실도, 평가점검 준비 상태, 창의 행정 건축 초과 노력 등 11) 감점 : 건축위원회 처리기간, 자료제출 기간 준수 여부 등	(±10)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시와 34개 기초지자체(광역시당 2곳) 등 51곳의 지자체로 하고 1차 서면평가는 2014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하였다. 2차 현장확인은 2014년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6개 권역에 대해 건축정책과장을 평가반장으로 하여 2개 반(1개 반 2명)이 지자체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권역별 세부일정은 다음과 같다.

구분	제1반(8개 시·도) (수도권, 충청권 등)	제2반(9개 시·도) (영남권, 호남권)
총괄반장	건축정책과장	건축정책과장
점검반	1반 (2명 : 사무관 1, 주무관 1)	2반 (2명 : 사무관 1, 주무관 1)
11월 20일	충청권 (대전, 충북, 충남, 세종) · 대전(10~12시), · 충북(13~15시), · 충남(15~17시), · 세종(17~18시) * 점검장(대전시청)	영남권 (대구, 울산, 경북) · 대구(10~12시), · 울산(14~16시), · 경북(16~18시) * 점검장(대구시청)
11월 21일	수도권 (경기, 인천) · 경기(10~14시), · 인천(14~17시) * 점검장(경기도청)	영남권 등 (부산, 제주, 경남) · 부산(10~12시), · 제주(14~16시), · 경남(16~18시) * 점검장(부산시청)
11월 24일	수도권 등 (서울, 강원) · 서울(10~14시), · 강원(14~17시) * 점검장(서울시청)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 광주(10~12시), · 전북(14~16시), · 전남(16~18시) * 점검장(광주시청)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결과

국토교통부가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를 실시한 결과 지자체들이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총 1,178건의 숨은 건축규제 중 700여 건을 정비·폐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지역 규제 개선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찾아가는 건축 상담, 저소득층 건축설계 무료지원, 인·허가 건축 알림 서비스 등 지자체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지역 맞춤형 건축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건축민원 관련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적극 노력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평가결과가 아주 우수한 지자체로는 경상남도, 대구시, 대전시 등 3곳이 뽑혔다. 경상남도는 자체 발굴한 불합리한 지역건축 규제 18건을 모두 신속히 폐지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였으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초기에 설치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대구시는 민원 콜센터 운영 등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2013년 1,336건에서 2014년에는 716건(▲620)으로 건축민원 수가 대폭 감축(▲46%, 평균 ▲10%)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대전시는 건축 관련 전문가의 소통의 장인 <건축문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여 지역 건축문화의 발전기반을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성과 및 한계

2014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지자체 임의규제 발굴·개선을 통해 대국민 건축행정 서비스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현장점검 시 다른 지자체의 건축행정 우수사례를 전파·확산하여 건축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 지속적인 지역건축규제 개선과 함께 건축협정,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등 2015년 본격 운영되는 건축제도의 이행 실태를 중점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자체별 평가 순위 및 점수(2014 건축행정 건설화)

구분	규제 개선을 (10점)	규제 폐지를 (25점)	민원처리/ 인·허가처리 (5점)	국토부 민원건 (10점)	민원 감축도 (5점)	건축협 정제도 (15점)	건축민원 위원회 (15점)	창의건축 행정 등 (10점)	가점 (10점)	감점 (△10점)	합계	순위
경남	15	25	4 (+0.15)	7.2 (+0.3)	2.4	10	15	10	6	1	94.05	1
대구	15	25	3.2	8.0	4.8	10	5	10	8	2	87.0	2
대전	15	25	4.8 (-0.45)	6.8 (-0.9)	3	10	5	7	10	1	84.25	3
서울	10	25	1.8	4.0	3.4	15	10	5	9	2	81.2	4
부산	10	17	2.2 (-0.15)	5.6 (-0.3)	3.6	15	15	8	9	4	80.95	5
세종	15	25	5 (-0.6)	5.2 (-1.2)	5	5	10	6	5	2	77.4	6
전북	10	17	3.4	9.2	4.4	15	5	10	6	3	77.0	7
전남	5	17	3.8 (+0.15)	8.4 (+0.3)	4.2	10	15	3	8	1	73.85	8
경기	5	17	3.0 (+0.75)	6.4 (+1.5)	2.6	10	15	7	8	4	72.25	9
충북	10	10	4.4	7.6	2.8	10	15	7	7	4	69.8	10
충남	10	17	3.6 (-0.6)	3.6 (-1.2)	3.8	10	10	7	8	3	68.2	11
경북	15	10	4.8 (+0.45)	10 (+0.9)	1.8	15	5	7	4	6	67.95	12
울산	10	25	2.8 (-0.45)	6.0 (-0.9)	2.2	10	10	3	2	2	67.65	13
강원	10	10	4.6	8.8	4	10	10	7	7	4	67.4	14
인천	10	17	2 (-0.3)	4.4 (-0.6)	3.2	5	10	7	5	2	60.7	15
제주	5	10	4.2 (-0.3)	9.6 (-0.6)	2	10	5	3	5	1	51.9	16
광주	5	10	2.4 (-0.45)	4.8 (-0.9)	4.6	5	5	10	7	4	48.45	17

() : 보정 점수 반영

아울러 특별·광역시와 광역도 간의 건축행정 여건(특별·광역시는 단일 건축조례, 광역도는 시·군·구별로 조례 운영 등)과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할 때 특별·광역시와 광역도별로 분리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할 듯하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도 일부 외부 전문

기관이 참여하였으나,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이 필요하며, 평가 시 외부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